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20 선고 2024가단52199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

변론 종결 2024. 11. 22.

판결 선고 2024. 12. 20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2023. 2. 11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 약정을 46,125,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6,125,000원 및 이에
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단

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C이 2023. 3. 7. 제주지방법원 2023느단155호로 망 D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, 위 법원이 2023. 3. 28.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'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) 결국 C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1)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효연

별지

1) 원고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.